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기금의 설치)	제2조(기금의 설치)
③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	③ <삭제>
일까지로 하되,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	
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	
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	
제3조(기금의 재원) (생 략)	제3조(기금의 재원) (현행과 같음)
1.「도로법」제76조에 따라 구청장이	1제91조
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	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제15조(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	제15조(존속기한)
<u>2016년 12월 31일자로</u> 하되, 존속	<u>2021년 12월 31일까지로</u>
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	
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	
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	
연장할 수 있다.	